

[하영태 상법연습(객관식 문제집) 특강 자료 설명]

2021. 4. 1

- ▶자료1: 상법연습(객) 기존(2020.4.25.) 제공 되었던 오탈자 및 정오표
- ▶자료2: 기출판례와 개정된 상법조문 등 신규문제 및 지문보충
- ▶자료3: **2020년 1월~2021년 3월말까지 최신판례 문제=>수업중 제공**
- ▶자료4: **핵심정리 암기자료=>수업중 제공**

▣자료1

[법무사 상법연습(초판) 정오표]

-2020.4.25./무지개BOOKS 제공-

수정 페이지/문제	수정 전	수정 후
22/6번	⑤ 공동지배인의 능동대리~	⑤ 공동지배인이~
38/1번	1. 다음 중 지배인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한 내용 중~	1. 다음 중 상업장부 에 관한 내용 중~
67/9번	⑤~하지만, 조합의 채권자~	⑤~, 영농조합법인의 ~
67/9번 해설	⑤~이러한 법리는 조합의 채권자~	⑤~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
90/1번	1. 다음 중 지배인의 자격 및 선임에~	1. 다음 중 중개업 에~
95/3번	④~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부담한 때에는~	④~고가로 매수한 경우, 위탁매매인이~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95/3번 해설	④ 상법 제106조 제1항	④ 상법 제106조 제1항(차액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에 효력이 없다).
159/4번	4. 다음은 상법상 ~	4. 다음 중 상법상 ~
164/12번	②~ 감정인의 감정 으로~ ④ 모집설립 의 경우~	②~ 공증인의 공증 으로~ ④ 모집설립 의 경우~
188/14번	①~ 단체적 법률관계 의 특성~	①~ 개인적 법률관계 의 특성~
188/14번 해설	①~2017다221501.	①~2017다221501(단체적 법률관계 의 특성).
196/26번	⑤~ 등이 있다.	⑤~ 등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223/18번	①~ 사망으로 중단 된다.	①~ 사망으로 종료 된다.
236/1번	1. 다음은~ 옳지 않은 것은?	1. 다음은~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322/2번	2. 다음은~	3. 다음은~
322/3번	3. 다음은~	4. 다음은~
323/4번	4. 다음은~	5. 다음은~
323/5번	5. 다음은~	6. 다음은~
324/6번	6. 다음은~	7. 다음은~
324/7번	7. 다음은~	8. 다음은~

325/8번	8. 다음은~	9. 다음은~
440/1번	①~확정일출급, 만기 또는 분할출급~	①~확정일출급, 분할출급~
440/1번 해설	①~, 제2항(만기 또는 분할출급~).	①~, 제2항(분할출급~).
459/3번	②~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②~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자료2

●13면 [판례정리]

수정전	<1> 추가
수정후	<1>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13면 [문제1]

수정전	⑤ 당사자 중~상법을 적용한다.
수정후	⑤ 당사자 중~상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13면 [문제1][해설]

수정전	⑤ 상법 제3조.
수정후	⑤ 상법 제3조: 대판 2014.4.10. 2013다68207.

●32면 [문제4]

수정전	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신청할 수 없다.
수정후	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신청할 수 없다.

●47면 [문제1]

수정전	③ 상인이 아닌 자도 영업을 양수할 수 있다.
수정후	③ <u>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그 계약서의 작성이나 기재사항도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상인이 아닌 자도 영업을 양수할 수 있다.</u>

●47면 [문제1][해설]

수정전	③ 비상인의 영업양수는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한다.
수정후	③ <u>대판 2009.1.15. 2007다17123,17130: 비상인의 영업양수는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한다.</u>

●67면 [문제9]

수정전	④ 주채무가~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수정후	④ 주채무가~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u>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u>

●67면 [문제9][해설]

수정전	④ 상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수정후	④ 상법 제57조 제1항, 제2항: <u>대판 2018.4.12. 2016다39897.</u>

●71면 [문제16]

수정전	⑤ 상인이~단기인 3년이다.
수정후	⑤ 상인이~단기인 3년이다. <u>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도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도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u>

●71면 [문제16][해설]

수정전	⑤ 상법 제64조~상품의 대가.
수정후	⑤ 상법 제64조~상품의 대가: <u>대판 1979.11.13. 79다1453.</u>

●78면 [문제3]

수정전	② 목적물에~해제할 수 있다.
수정후	② 목적물에~해제할 수 있다. <u>다만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u>

●78면 [문제3][해설]

수정전	② 상법 제69조 제1항(~있다).
수정후	② 상법 제69조 제1항(~있다): <u>대판 1999.01.29. 98다1584.</u>

●88면 [조문이론]

수정전	<1> 대리상이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수정후	<1> 대리상이란~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u>또한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u>

●133면 [문제1]

수정전	1. 다음은~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후	1. 다음은~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명회사의~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u>따라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u>

●134면 [문제1][해설]

수정전	① 상법 제195조.
수정후	① 상법 제195조: <u>대판 2015.5.29. 2014다51541(상법 제195조에 비추어 볼 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u>

●176면 [조문정리]

수정전	<32>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통지 또는 공고한 주권의 제출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환으로 인한 신·구주간의 일할계산 등의 변잡을 피하기 위하여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이사회가 통지 또는 공고한 주권의 제출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수정후	<32> <u>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통지 또는 공고한 주권의 제출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u>

●177면 [판례정리]

수정전	<1_1>추가
수정후	<u><1_1>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u>

●179면 [판례정리]

수정전	<17><18><19><20>추가
수정후	<p><17>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교부시설).</p> <p><18>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로써,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다만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9>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무권리자(주권을 절취나 습득한 자 등)여야 하지만, 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리고 주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에 하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악의 또는 중과실의 존부는 주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p><20>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권판결을 얻지 않은 때에는 주권을 상실한 자가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도 재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반하여 재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그리고 주권을 분실한 것이 원고가 아니고 주권발행회사라 하더라도 분실한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p>

●181-182면 [문제5]

수정전	③ 가설인~책임이 있다.
수정후	③ 가설인~책임이 있다. <u>다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u>

●181-182면 [문제5][해설]

수정전	③ 상법 제332조 제1항.
수정후	③ 상법 제332조 제1항: <u>대판 2017.12.5. 2016다265351.</u>

●184면 [문제8_1추가]

수정전	문제 8_1 추가
수정후	<p>8-1. 다음은 상법상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성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p> <p>① <u>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 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u></p> <p>② <u>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 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u></p> <p>③ <u>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일부부터 장래를 향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고 최초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u></p>

	<p>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p> <p>④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p> <p>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줄 의무는 없다.</p> <p><정답> ⑤</p> <p><해설> ①② 대판 2018.10.12. 2017다221501. ③ 대판 2010.4.29.2009다88631. ④ 대판 1995.05.23. 94다36421. ⑤ 대판 2006.9.14. 2005다45537(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줄 의무를 부담한다).</p>
--	---

●185면 [문제10]

수정전	① 주식의 양도는~채권적 효력은 있다.
수정후	① 주식의 양도는~채권적 효력은 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185면 [문제10][해설]

수정전	① 승인 없는~채권적 효력은 있다.
수정후	① 대판 2008.7.10. 2007다14193(승인 없는 양도행위라고 하더라도 양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은 있다).

●197-198면 [문제28]

수정전	④ 주식의 전환은~것으로 본다.
수정후	④ <u>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통지 또는 공고한 주권의 제출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u>

●197-198면 [문제28][해설]

수정전	④ 상법 제350조 제1항: 상법 제350조 제3항 전단.
수정후	④ <u>상법 제350조 제1항.</u>

●200면 [문제32]

수정전	⑤ 상법 제356조에서는~효력에 지장이 없다.
수정후	⑤ <u>상법 제356조에서는~효력에 지장이 없다. 다만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u>

●200면 [문제32][해설]

수정전	⑤ 대판 1996.01.26. 94다24039(~되지 않는다).
수정후	⑤ 대판 1996.01.26. 94다24039(~되지 않는다): <u>대판 2000.3.23. 99다67529(교부시설).</u>

●201면 [문제33]

수정전	33번 추가
수정후	<u>33. 다음은 상법상 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u> ① <u>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로써,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u>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②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무권리자(주권을 절취나 습득한 자 등)여야 하지만, 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주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에 하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악의 또는 중과실의 존부는 주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권판결을 얻지 않은 때에는 주권을 상실한 자가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도 재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반하여 재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그리고 주권을 분실한 것이 원고가 아니고 주권발행 회사라 하더라도 분실한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대판 2000.9.8. 99다58471. ②대판 2000.9.8. 99다58471. ③대판 1997.12.12. 95다49646(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 된다). ④대판 2000.9.8. 99다58471(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⑤상법 제360조 제2항: 대판 2013.12.12. 2011다112247: 대판 1981.09.08. 81다141.

●210면 [판례정리]

수정전	<1_1> <1_2> 추가
수정후	<p><1_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p> <p><1-2>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위와 같이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p>

●217면 [문제8]

수정전	① 주주는~제출하여야 한다.
수정후	① 주주는~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

●217면 [문제8][해설]

수정전	① 상법 제368조 제2항.
수정후	① 상법 제368조 제2항: 대판 2009.4.23. 2005다22701,22718.

●218면 [문제10]

수정전	③ 회사가~의결권이 없다.
수정후	③ 회사가~의결권이 없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8면 [문제10][해설]

수정전	③ 상법 제369조 제2항.
수정후	③ 상법 제369조 제2항: 대판 2017.8.18. 2015다5569.

●218-219면 [문제11]

수정전	③ 총회의~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정후	③ 상법 제409조 제2항 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위와 같이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상법 제368조 제1항 의 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219면 [문제11][해설]

수정전	③ 상법 제371조 제1항.
수정후	③ 대판 2016.8.17. 2016다222996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220면 [문제13]

수정전	① 회사의~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수정후	① 회사의~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20면 [문제13][해설]

수정전	①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수정후	①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u>대판 2018.4.26. 2017다288757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다).</u>

●222면 [문제16]

수정전	② 결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정후	② 결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22면 [문제16][해설]

수정전	② 상법 제376조 제1항.
수정후	② 상법 제376조 제1항: <u>대판 2010.3.11. 2007다51505.</u>

●241면 [문제9]

수정전	① 이사의 보수는~정한다.
수정후	① 이사의 보수는~정한다. <u>다만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위 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 없다.</u>

●241면 [문제9][해설]

수정전	①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수정후	①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u>대판 2016.1.28. 2014다11888.</u>

●243면 [문제12]

수정전	③ 대표이사는~결정할 수 있다.
수정후	③ 대표이사는~결정할 수 있다. <u>다만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u>

●243면 [문제12][해설]

수정전	③ 대판 1997.06.13. 96다48282.
수정후	③ 대판 1997.06.13. 96다48282: <u>대판 2019.8.14. 2019다204463.</u>

●244면 [문제14]

수정전	① 대표이사가~전결하지 못한다.
수정후	① 대표이사가~전결하지 못한다. <u>다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u>

●244면 [문제14][해설]

수정전	① 정관·이사회규칙·이사회 결의~의사결정권한이 있다).
수정후	① 정관·이사회규칙·이사회 결의~의사결정권한이 있다): 대판 2009.3.26. 2006다47677.

●246면 [문제17]

수정전	③ 이사회를~단축할 수 있다.
수정후	③ 이사회를~단축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회의 소집통지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통지하여도 무방하고, 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할 필요도 없다.

●246면 [문제17][해설]

수정전	③ 상법 제390조 제3항(단축할 수 있다).
수정후	③ 상법 제390조 제3항(단축할 수 있다): 대판 2011.06.24. 2009다35033.

●263면 [문제44_1, 44_2 추가]

수정전	[문제44_1, 44_2 추가]
수정후	<p>44_1. 다음은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p> <p>①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p> <p>②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며, 그 비율은 제소 당시에만 충족되면 되고 그 이후에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p> <p>③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자기의 보유주식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였거나 또는 주식회사가 완전감자를 한 결과 기존주주의 지분이 전혀 없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제소한 주주가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원고인 주주의 요건을 유지하</p>

지 못하여 소가 각하된다. 이때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대표소송의 피고는 자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이사 또는 이사였던 자이다. 그리고 자회사의 이사 외에도 발기인, 감사, 청산인, 업무집행관여자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

⑤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모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⑤

<해설>① 상법 제406의2. ②상법 제406의2 제1항, 제3항. ③상법 제426의2 제3항: 대판 2018.11.29. 2017다35717. ④상법 제406의2 제1항. ⑤ 상법 제406의2 제1항, 제3항(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44 2. 다음은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회사의 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중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갖춘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자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먼저 제소청구를 할 필요 없이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자회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자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 청구는 자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하여야 한다.

③ 다중대표소송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의 수분이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소의

	<p><u>효력에 영향이 있다.</u></p> <p>④ <u>다중대표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u></p> <p>⑤ <u>모회사의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자회사에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지체 없이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다중대표소송에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u></p> <p><정답>③</p> <p><해설>① 상법 제406의2 제3항. ②상법 제394조 제1항. ③ 상법 제406의2 제4항(다중대표소송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상법 제406의2 제5항. ⑤ 상법 제406의2 제3항.</p>
--	---

●269면 [문제2]

수정전	① <u>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수정후	① <u>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아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u> 그리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69면 [문제2][해설]

수정전	① 상법 제409조의2.
수정후	① <u>상법 제409조 제3항</u> : 상법 제409조의2.

●273면 [판례정리]

수정전	<6> 추가
수정후	<6>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75면 [문제4]

수정전	③ 정관에~경우에 한한다.
수정후	③ 정관에~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76면 [문제4][해설]

수정전	③ 상법 제418조 제2항.
수정후	③ 상법 제418조 제2항: 대판 2009.01.30. 2008다50776.

●277면 [문제7]

수정전	① 신주발행의~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무효의~효력을 잃는다.
수정후	① 신주발행의~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77면 [문제7][해설]

수정전	① 상법 제429조(신주발행의 무효의 소). ④ 상법 제431조 제1항.
수정후	① 상법 제429조(신주발행의 무효의 소): <u>상법 제431조 제1항.</u> ④ <u>대판 2010.04.29. 2008다65860.</u>

●337면 [문제5_1 추가]

수정전	[문제5_1 추가]
수정후	<p>5_1. 다음은 상법상 보험의 통칙(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p> <p>①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p> <p>②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p> <p>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p> <p>④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보</p>

	<p>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 전부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고려에 따라 마련된 임의규정일 뿐이므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더는 상법 제644조에 저촉되어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p> <p><정답>③</p> <p><해설>①대판 2004.6.11. 2003다18494(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②대판 2018.4.12. 2017다229536(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상법 제638조의2 제3항. ④대판 1999.3.9. 98다43342(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대판 2002.6.28. 2001다59064(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p>
--	---

●350면 [판례정리]

수정전	<4_1> <4_2> 추가
수정후	<4_1>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p>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민법상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p> <p><4_2>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p>
--	--

●356-357면 [문제9]

수정전	<p>① 보험의~권리를 취득한다. ② 보험목적에~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④ 제3자에~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수정후	<p>① 보험의~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서 보험금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p>

	<p><u>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민법상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u></p> <p>④ 제3자에~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u>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u></p>
--	---

●356-357면 [문제9][해설]

수정전	<p>① 상법 제681조 본문.</p> <p>② 상법 제681조 단서.</p> <p>④ 상법 제682조 제1항.</p>
수정후	<p>① <u>상법 제681조.</u></p> <p>② <u>대판 2015.1.22. 2014다46211.전합.</u></p> <p>④ 상법 제682조 제1항: <u>대판 1993.6.29. 93다1770.</u></p>

●357면 [문제10]

수정전	<p>① 상법 제682조의~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p> <p>② 피보험자~대위할 수 없다.</p>
수정후	<p>① <u>상법 제682조의~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그리고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u></p> <p>② <u>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u></p>

◎357면 [문제10][해설]

수정전	① 대판 1995.11.14. 94다33092. ②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
수정후	① 대판 1995.11.14. 94다33092: <u>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u> ② 대판 1997.11.11. 97다37609.

◎358면 [문제10_1]

수정전	[문제10_1] 추가 10_1. 다음은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정후	<p>①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 이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p> <p>②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p> <p>④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p>

	<p>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p> <p>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p> <p><정답>③</p> <p><해설>①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대판 2019.11.14. 2019다216589. ② 대판 2019.11.14. 2019다216589. ③ 대판 2019.11.14. 2019다216589(공제할 것이 아니다). ④ 대판 2015.1.22. 2014다46211.전합[예] 전체 손해액(A: 10,000), 제3자 상대의 손해배상책임액(과실상계로 제한된 책임액)(B: 7,000), 손해 보험금(C: 2,000 또는 4,000)이 있는 경우에 제3자 상대의 배상청구 가능금액은 ①A-C(2,000)>B: B전체를 청구, ②A-C(4,000)<B: 남은 손해액(A-C)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의 대위청구금액은 제3자 상대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B-(A-C)]이 된다]. ⑤ 대판 2019.11.14. 2019다216589.</p>
--	---

●372면 [문제8]

수정전	<p>① 상해보험은~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다.</p> <p>② 상해보험계약의~를 할 책임이 있다.</p>
수정후	<p>① 상해보험은~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다. 그리고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p> <p>②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p>

	<p>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출산은 태아인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p>
--	---

●372면 [문제8][해설]

수정전	<p>① 대판 2007.4.13., 2006다49703: 상법 제737조. ② 상법 제737조.</p>
수정후	<p>① 대판 2007.4.13., 2006다49703: <u>상법 제737조.</u> ② <u>대판 2019.3.28. 2016다211224.</u></p>

●387면 [조문이론]

수정전	<p>[조문이론]=><7_1>추가</p>
수정후	<p><7_1>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리고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p>

●390면 [문제추가]

수정전	<p>문제추가</p>
수정후	<p>1.2. 다음은 상법상 운송과 용선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p> <p>①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p>

②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을 의미한다.

③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⑤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복합운송인은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정답> ②

<해설> ① 대판 2019.6.13. 2019다205947(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대판 2019.6.13. 2019다205947.

③ 대판 2019.7.10. 2019다213009(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p>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법 제 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p> <p>④ 대판 2019.6.13. 2019다205947(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⑤ 대판 2019.7.10. 2019다213009·상법 제816조 제2항(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p>
--	---

●407면 [판례정리]

수정전	<23> 추가
수정후	<p><23>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 교부, 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만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백지의 보충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p>

●415면 [문제14]

수정전	④ 어음발행일란의 백지보충을 하지 않고 지급 제시한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정후	<p>④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 교부, 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된다.</p>

●415면 [문제14][해설]

수정전	④ 대판 1993.11.23. 93다27765(어음발행일란의 보충없이 지급 제시를 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수정후	④ 대판 1976.3.9. 75다984.

●416면 [문제15]

수정전	③ 만기가~하면 된다.
수정후	③ 만기가~하면 된다. 그리고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만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백지의 보충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16면 [문제15][해설]

수정전	③ 대판 2003.5.30., 2003다16214.
수정후	③ 대판 2003.5.30., 2003다16214: 대판 2002.2.22. 2001다71507.

●418면 [문제18]

수정전	⑤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 행사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이다.
수정후	⑤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18면 [문제18][해설]

수정전	⑤ 대판 1976.7.13. 75다1751.
수정후	⑤ 대판 2010.5.20. 2009다48312 전합.

●419면 [문제19]

수정전	② 만기가~추정된다.
수정후	② 만기가~추정된다. 그리고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 행사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이다.

●419면 [문제19][해설]

수정전	② 만기를~된다.
수정후	② 만기를~된다: 대판 1976.7.13. 75다1751.

●423면 [판례정리 추가]

수정전	[판례정리]<1_1> 추가
수정후	<1_1>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배서의 연속이 단절되면 단절된 부분에 대해 자격수여적 효력(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음소지인이 스스로 권리자임(단절된 부분의 권리승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어음에 있어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457면 [판례정리]

수정전	<1> 어음이 위조된~그 지급은 유효하다.
수정후	<1> 어음이 위조된~그 지급은 유효하다. 이때 피위조자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피위조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

●458면 [문제1]

수정전	① 어음이~선의·악의를 불문한다. ② 어음채무자로 ~입증하여야 한다.
수정후	① 어음의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이 외관을 만드는 것이다. 어음이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②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이고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 피위조자는 사용자로서 위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58면 [문제1][해설]

수정전	② 대판 1993.8.24. 93다4151(어음에~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정후	② 대판 1994.11.18.93다21514: 전원합의체(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행위 책임이다).

●458-459면 [문제2]

수정전	⑤ 위조된~어음의 액면금액이다.
수정후	⑤ 위조된~어음의 액면금액이다. 그리고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그 수표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이다.

●459면 [문제3] 교체

수정전	[문제3] 교체
수정후	<p>3. 다음은 어음법상 어음이 위조·변조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다수 의견에 따름)</p> <p>①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관하여 규정한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을 전제로 권리의 귀속을 추정하는 규정이고 권리의 발생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아니다.</p> <p>② 어음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는 피위조자를 제외한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뜻이고,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까지도 어음채무의 발생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③ 배서란에 찍힌 명의의 인영이 배서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 경우 그 배서부분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인 배서인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추정이 깨어진다. 이때에는 어음을 증거로 제출한 어음소지인이 작성명의인인 배서인으로부터 날인을 할 권한위임을 받은 사람이 날인을 한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그 배서부분이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다.</p> <p>④ 어음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p> <p>⑤ 변조사실이 어음수표면상 명백한 경우에는 [기명날인자(배서인 등)에게 그 변조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p>

	<p>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변조 후에 있었던 사실,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변조에 동의 하였다는 것을 어음수표소지인이 입증하여야 하지만, 변조사실이 어음수표면상 명백하지 않으면 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변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어음수표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p> <p><정답> ④</p> <p><해설> ①②③ 대판 1993.8.24. 93다4151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④ 대판 1993.8.24. 93다4151 전원합의체 별개의견. ⑤ 대판 1987.3.24. 86다카37: 대판 1990.2.9, 89다카14165.</p>
--	--

●460면 [문제5]

수정전	<p>① 어음위조의~될 수도 있다.</p> <p>⑤ 발행이~책임을 지지 않는다.</p>
수정후	<p>①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p> <p>⑤ 피위조자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므로, 피위조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는 불필요하다.</p>

●461면 [문제5][해설]

수정전	<p>① 대판 2000.03.23. 99다50385(위조자~인정할 수 있다).</p> <p>⑤ 대판 1977.12.13. 77다1753(위조어음에 ~진다고 한다).</p>
수정후	<p>① 대판 1987.3.24. 86다카37.</p> <p>⑤ 대판 1998.2.10. 97다3113(피위조자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피위조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p>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영태 드림